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나온 정부	
		배포일시	2019. 12.6(금) 총 25매(본문2)		
담당 부서	자동차운영 보험과	담 당 자	•과장 이증기, 사무관 노경우, 주무관 이선학 •☎ (044) 201-3858, 3859		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8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.

-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'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*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.
 - * 오일 및 필터류 교환, 배터리 및 전구 교환,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
 -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, 엔진 오일 및 필터,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.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)
 -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(일명 카센터)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접수, 견적서 발급,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.

-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.
-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,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.
-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 『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』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며,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“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붙임 1.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.
 2.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별첨3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노경우 사무관(☎ 044-201-385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2

**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별첨3
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**

경제 활력 대책 회의
19-27



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

2019. 11. 13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목표 및 기본방향	2
III. 주요 개선과제	3
1.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	4
2. 생존·성장 저해규제 합리화	8
3.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	13
4. 현장애로 맞춤형 해소	17
IV. 향후 추진계획	19

I.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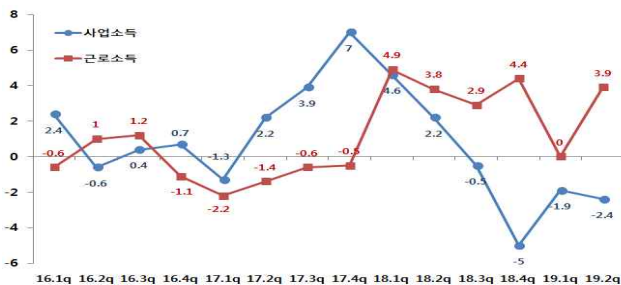
① 작은기업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일자리 대부분을 담당

- 중소기업(373만개) 중 규모가 큰 중기업은 11만개에 불과, 소상공인, 창업기업 등 **작은기업***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서민경제를 지탱
 - *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통칭하며, 매출, 고용인원수 등 특정 기준을 정하여 사용한 것은 아님
-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%, 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66%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작은기업이 **일자리**의 대부분을 담당
 - * 취업자수(천명, 경제활동인구조사, '19.9월) : 5,656(자영업), 27,404(전체)
 - * 종사자수(천명, 사업체조사기공, '17년) : 11,404(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), 17,294(전체)

② 구조적 한계·대내외 불확실성 등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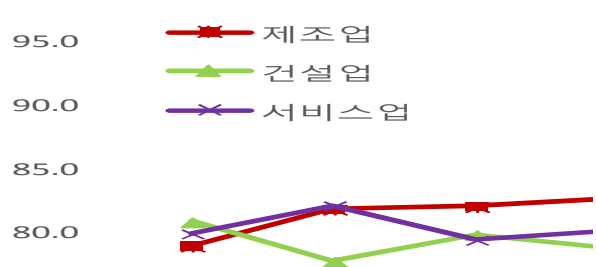
- 과당경쟁*과 적은 매출** 등 구조적 한계 및 최근 미중 무역전쟁,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경기 부진 지속
 - * 창업 후 5년차 생존율 : 28.5%(OECD 국가비교시 23위 수준)
 - ** 평균매출액(억원) : 2.1(소상공인), 12.6(순수 소기업) / 중기업은 118.6

실질 가계소득 증감률 추이



* 자료: 통계청,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

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(SBHI)



* 자료: 중소기업중앙회,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

- 영세한 작은기업들이 가장 먼저 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우려

⇒ 작은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경제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추진

Ⅱ. 목표 및 기본방향

◆ 규제애로 현장밀착 집중 발굴 및 작은기업 시각에서 공감개선

추진목표

작은기업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도모

□ **[개선] 작은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작은기업 시각에서 현실에 부합토록 규제완화·개선 및 현장애로도 해소**

개선 기본 방향

- ① **규제형평성** : 기업부담 측면에서 작은기업 영세성 고려
 - 작은기업 규제차등화, 친화적 규제기반 조성, 기업간 상생환경 조성 등
- ② **규제적절성** : 규제현장 및 규제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합리화
 - 변화된 기업환경 반영 및 경영자율 촉진, 규제효과 대비 부담규제 현실화
- ③ **규제체감도** : 직접 부담이 되는 금전·행정부담 감축 및 애로해소
 - 작은기업 다수가 적용받는 행정규제 간소화 및 부담감축 등

□ **[발굴]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(25개)별 맞춤형 현장밀착 발굴**

발굴 기본 방향

- ① 작은기업의 현장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세부 25개 특성별 기업군으로 나누어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 및 청취
 - * 서울자치구와 함께 중기 옴부즈만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('19.5~7월, 25회)

<작은기업 세부 기업군 현황>

구분	소기업·소상공인·자영업자(13곳)	창업기업(12곳)
제조업(8곳)	금속가공 소공인 / 의복 소공인 / 액세서리 소공인 / 수제화 소공인	첨단기술 / 고기술 / 중기술 / 저기술
비제조업(10곳)	도매업 / 소매업 / 숙박업 / 음식업 / 개인서비스 / 건설업	정보서비스 / 기술서비스 / 교육서비스 / 스포츠서비스
업태(7곳)	시장상인 / 상생기업(온라인입점업·프랜차이즈) / 사회적기업	청년창업 / 여성창업 / 벤처창업 / 예비창업

- ② 또한 작은기업 대상 일괄 제안공모(7.3만곳)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00여개 업종별 협·단체 의견 전면수렴('19.5~6월)

Ⅲ. 주요 개선과제

< 개선과제 총괄개요 >

□ (총괄) 작은기업 규제애로 306건 중 개선과제는 총 136건(기시행 25건 포함, 수용률 44.4%)*

* 기업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중기 옴부즈만이 대안을 마련하고 소관기관과 적극협약('19.8월)하였으며 그 중 파급력이 높은 주요 개선확정 과제를 우선적으로 발표

□ (주요 개선과제) 개선된 136건 중 주요과제 40건 선정

구분	주요 개선과제
1.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 (9건)	
등록·허가	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허용 등 6건
입지·건축	산업단지 비제조업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등 3건
2. 생존·성장 저해규제 합리화 (15건)	
거래·판로	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부과방식 합리화 등 9건
인력·기술	미용관련 재학생 실습규정 마련 등 6건
3.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 (10건)	
준조세	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확대 등 5건
행정부담	동일세대원 복수 연대보증 채무조정 행정부담 경감 등 5건
4. 현장애로 맞춤형 해소 (6건)	
현장애로	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주자격 완화 등 6건

□ (소관기관) 부처 35건, 지자체 4건, 공공기관 1건

- 문체부·국세청(5건), 고용부·산업부(4건), 행안부·복지부(3건), 과기정통부·환경부·중기부(2건) 등 15개 부처가 개선

※ 참고로 건의과제 306건 분석결과, 고용부 59건, 중기부 34건, 기재부 28건 등 부처과제가 235건, 지자체 소관 55건, 공공기관 16건 등임

* 특히 인력애로는 25개 대부분의 지역·기업군에서 건의가 이루어져 지속적인 관리 필요

1.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

◆ 사업초기 직면하는 작은기업 등록·허가, 입지·건축 규제완화(9건)

1-1. 등록·허가 분야 (6건)

① 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허용^{창업기업}

- (현황) 스타트업 공유오피스* 입주 및 지원정책이 늘고 있으나, 사업장** 적합성 판단기준이 세무서별로 상이하여 등록애로

* 현황 : (서울 입차면적) 21.5만㎡, (오피스면적 점유율) '14년 0.2%→'17년 0.5%

**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은 사업거래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

[사례1]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A사는 공유오피스에 대한 판단근거가 세무서별로 상이하여 사업자등록 지연 등 기업 활동에 지장

[사례2] 서부경기문화 창조허브(경기도)는 세무서가 공유오피스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수차례 지난한 협의를 거쳐 1평당 1개 기업이 사업자등록 실시

- (개선) 우선적으로 공공성을 감안하여 지자체, 공공기관의 공유 사업장에 한하여 입주기업 사업자등록 허용

☞ 행정조치 : 사업자등록 세부지침 마련 및 일선 세무서 전파('19.하/국세청)

② 개인위치정보 창업기업 진입규제 완화^{기술서비스·창업기업}

- (현황) 개인위치정보사업*은 허가제로서 엄격한 심사기준·절차 및 복잡한 서류제출 등 진입장벽이 높아 사업추진에 걸림돌

* 현황('19.9월) : (개인위치정보사업) 217곳, (위치기반서비스사업) 약 1,200곳

[사례] 자동차공유플랫폼 창업자 A씨는 위치정보사업의 너무 높은 재무평가 항목, 복잡하고 과도한 제출서류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 포기 및 사업전환

- (개선)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시설·인력 등 최소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개시 허용

☞ 행정조치 :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('20.하/방통위)

③ 관광통역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사업지원서비스.창업기업

- (현황) 개별여행객 관광안내 수요가 증가*하나 관광통역안내사는 맞춤 등록요건이 불비, 높은 기준의 여행업 등록**을 하여야 함

* 극장공연·역사문화·고궁탐방·맛집여행·쇼핑여행 등 개별여행객 중심으로 소규모 맞춤형 스토리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(단체 20.1%, 개별 79.9%, '18년)

** 자본금(천만원) : (일반여행업) 10, (국외여행업) 3, (국내여행업) 1.5

[사례] 관광통역안내사 B씨는 면허종도 가진 개인사업자임에도 1인 관광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을 들여 일반여행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불만 토로

- (개선) 관광안내업(개인·법인)을 신설하고 관광통역안내사 개인의 경우 별도 자본금 없이 사업장 보유만으로 사업자 등록 허용

* 창업 규제 혁신방안(국조실, '18.10월) 기 발표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인기업은 사업장·안내사 자격만으로 창업허용하고 법인은 자본금 15백만원 요건을 추가

☞ 행정조치 :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('19.하/문체부)

④ 소형호텔 등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부담 완화 숙박업

- (현황) 소형·의료·수상관광 등 관광숙박업은 과도한 등록기준*과 사업계획 승인요건**으로 인해 창업·운영에 상당한 비용부담

* 세부호텔별로 객실규모(원칙 30실 이상), 편의시설 구비 등 각종 기준자격 부여

** 일반주거지역 내 도로연접규제, 대지면적 조경비율 등 추가요건 충족 요구

- 또한 관광호텔 등급평가 수수료(4~5성, 246만원), 암행평가 요원 숙박비·식사비(4성 46만원, 5성 61만원) 등에 대하여 기업 불만

[사례] 모텔운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식당을 갖춘 소형호텔업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2개 이상의 부대시설 요건으로 '식당' 외에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워 소형호텔업 전환 포기

- (개선) 소형·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업 전반에 대한 등록기준 및 분류체계를 종합 검토·분석하여 규제부담 현실화

- 호텔 등급평가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평가비 인하(27만원↓)

☞ 행정조치 : 관광진흥법 시행령,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및 관광숙박업 종합연구 용역실시('19.하/문체부)

5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·추진 음식업·개인서비스

- (현황)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 시설분리 요건으로 인해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애로

[사례] 예비창업자 C씨는 직접 동전이나 지폐를 투입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코인 노래연습장에 휴게음식점을 도입, 복합시설로 운영하려고 하나 영업소별로 출입문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사업포기

- (개선)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휴게음식점(차, 다류, 분식 판매) 등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등 복합설치 방안 종합검토 추진

☞ 행정조치 :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허용범위 및 설치대수 등 종합검토('20.상) →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('20.하/문체부)

6 종합미용사 자격 신설 및 종합미용업 면허 부여 개인서비스·창업기업

- (현황) 종합미용업은 세부 미용업과 달리 학력 취득자(최소 고등기술 학교 1년이상 이수자 등)만 면허취득 가능, 실무경력자 불인정

-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합미용업 예비창업자는 세부 부문별 국가기술자격을 별도로 취득하여야만 하는 불편 및 부담 발생

[사례] 퇴직 후 예비창업자 A씨는 미용업 일반, 피부, 손톱·발톱, 화장·분장 4가지 기능사를 모두 취득하기 위해 개별 학원등록, 각기 진행되는 필기 시험, 실기(면접)시험 일정을 모두 맞춰 진행하느라 장기간동안 개업 곤란

- (개선) 미용사 관련협회와 협업하여 종합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추진 및 종합미용사 관련 면허요건 확대

☞ 행정조치 : 국가기술자격 신청절차 추진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'20.하/복지부)

1-2. 입지·건축 분야 (3건)

1 산업단지 비제조업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소기업

- (현황) 제조업 부대시설 범위는 명문화되어 있으나 제조업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범위규정이 없어 기업 혼란

* 산업단지는 제조업 이외 지식산업(연구개발업 등)과 정보통신산업 등 입주가능

- 즉 **산단 비제조업은 기존 제조업의 부대시설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업종 다양성 및 지역 특징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**

* 또한 국가산단은 산업부장관 또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포함할 수 있으나 일반산업단지(지자체)는 권한 부재

○ **(개선) 입주기업체, 지자체, 산단 관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산단 내 비제조업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및 관련규정 개정**

* 필요시 일반산단에 대해서도 산단 부대시설 추가권한을 부여하여 탄력적 대응 유도

☞ 행정조치 :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'20.상/산업부)

②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비율 상향조정^{소기업}

○ **(현황) 산단의 경우, 지식산업센터* 지원시설** 면적비율이 건축 연면적의 20%로 낮게 규정되어 있어 입주기업 각종 불편 초래**

* 제조·지식·정보통신산업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입주하는 집합건축물

** 입주기업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·무역·물류 시설 뿐 아니라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어린이집·기숙사 등도 가능

○ **(개선)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최대 면적비율을 수도권 산단 이외 지역과 동일하게 20%에서 30%로 상향조정**

☞ 행정조치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'19.9월/산업부)

③ 마곡일반산업단지 연구시설 공실활용 활성화^{창업기업}

○ **(현황) 마곡산단 입주기업은 연구시설 면적이 일정기준*을 충족 하여야만 사업개시 신고·준공이 가능하나 그 이행이 어려움**

* 입주계약시 사업계획서로 체결한 연구시설 면적비율(대기업은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최소 50% 이상, 중소기업은 40% 이상)

- 이에 입주기업은 공실관리 등 기업경영에 애로가 적지 않으며 창업기업 등은 비용부담 없이 연구시설 사용을 희망

○ **(개선) 마곡산단 연구시설 공실을 벤처·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 공유제 마련 및 공실 입주절차 진행**

☞ 행정조치 :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개정('19.7월) 및 공실입주자 선정 공개모집, 심사·선정 및 입주절차 진행('19.하/서울시)

2. 생존·성장 저해규제 합리화

◆ 기업생존·성장 핵심요인인 거래·판로, 인력·기술 규제개선(15건)

2-1. 거래·판로 분야 (9건)

1. 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부과방식 합리화^{플랫폼입점업}

- (현황) 홈쇼핑 방송수수료가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수수료 방식인 경우, 판매부진시 납품업체 부담 과다
 - * 특히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이 전체시간(9.3%)보다 높은 수준(11.7%, '18년)
- (개선) 전체 방송시간 기준 외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제품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 유도를 통한 납품업체 부담완화
 - ☞ 행정조치 :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제품 정액방송 편성비율 인하계획 반영('20.상/과기정통부)

2. 건설기술용역 지방계약 적격통과점수 상향조정^{기술서비스}

- (현황) 지방 기술용역계약의 경우, 적정대가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적격통과점수*가 국가계약보다 낮아** 관련업체 불만
 - * 최저가입찰자에 대한 수행능력·입찰가격 등 적격평가시 낙찰가능한 최소한의 점수
 - ** 지방계약 : (10억 미만) 95점, (10억~30억 미만) 90점, (30억 이상) 85점
 - 국가계약 : (10억 미만) 95점, (10억 이상) 92점
- (개선) 낙찰자 현황 실태조사 및 지자체·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기술용역의 적격통과점수 상향 조정
 - ☞ 행정조치 :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예규) 개정('20.하/행안부)

3. 주류 전문소매점 취급 판매품목 기준 합리화^{소매업}

- (현황) 주류전문소매업은 면허대상 주류 이외 치즈,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을 판매코자 하나 판매가능 별도품목 기준 부재

[사례] 주류전문소매점 A사는 편의점에서 식·음료 잡화 주류를 취급하고 있고 대형 슈퍼마켓 또한 추가로 위스키, 보드카 등을 다량 취급하여 주류전문매장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치즈도 하나 못 팔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토로

- (개선) 주류 전문소매점 사업범위 및 조건을 명확히 해석하여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면서 취급주류와 관련된 상품 판매허용

☞ 행정조치 : 주세사무처리규정(사업범위 및 조건) 해석 명확화('19.하/국세청)

4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비율 표준화^{소공인}

- (현황) 소규모 공예품* 제작자·공방은 위탁판매를 선호*하나 판매 수익 배분기준이 불균등**하여 이윤창출에 어려움

*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·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대량생산 및 직접판매가 어려움

** 공예가와 위탁판매업체간 통상판매수익 배분비율이 6:4 또는 5:5로 거래되고 있음

- (개선) 공예품 작가 및 공방, 공공·민간 판매유통처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관련연구를 거쳐 공예품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

☞ 행정조치 : 의견수렴 및 예산확보('20년), 연구 및 공예품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('21.상문체부)

5 주류 경품제한 규정 현실화^{소매업}

- (현황) 주류 경품 제공은 주종별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1% 이하 및 주류 거래금액의 5%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

* 수제맥주 등 영세 기업은 판촉활동 곤란으로 대형 제조업체와 경쟁 어려움

- (개선) 주류의 현실적인 판촉행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, 주류 제조·도매업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류 경품한도 현실화

☞ 행정조치 :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('19.하/국세청)

6 자동차정비업자 점검·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^{수리업}

- (현황) 정비업은 와이퍼·엔진오일 교체 등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 제외사항에 대하여도 점검·정비견적서를 발급*하여야 함

* 자영업자는 동일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어 형평성 문제 야기

- (개선)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대하여 점검·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마련

☞ 행정조치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개정('19.하/국토부)

7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불편 완화^{기술서비스}

- (현황) 다양한 저작권 이용·허락 양태, 복잡한 업무특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부담 및 대리중개 시장활성화 저하

* 저작권 대리중개업 관련 표준계약서 작성방법 등을 제공중이나 이해편의성 부족

- (개선) 저작권 대리중개 활성화, 대리중개업 불편완화 및 저작자·이용자의 공정하고 편리한 활용을 위해 표준계약 약관* 합리화

* 대리중개하는 저작물 및 지분권의 범위 표시방법, 업무 준수사항(금지행위) 등

☞ 행정조치 : 의견수렴('20.상), 저작권 대리중개업 표준계약약관 개정('20.하/문체부)

8 섬유제품 공동계약에 의한 조달 활성화^{소공인}

- (현황) 소규모 봉제업체는 현실적으로 '18.9월 마련*된 섬유제품 최소 기술인력 기준**을 충족할 수 없어 조달시장 진입애로

*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(조달청 지침으로 정부입법지원센터 미등재 행정규칙)

** (0.5억 초과) 7명, (1억 초과) 10명, (2억 초과) 20명, (5억 초과) 35명, (10억 초과) 60명

- (개선) 섬유제품 공동이행 계약방식에 의한 입찰참여를 활성화 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유도하고 관련지침을 행정규칙으로 명확화

☞ 행정조치 : 섬유제품 공동이행방식 입찰참여 활성화 공문시행 및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재 실시('19.하/조달청)

9 소규모 지방용역 조달시 과도한 실적평가 관행개선^{창업기업}

- (현황) 소규모 지방용역조달임에도 발주기관이 법령원칙*과 달리 입찰·제안서 평가시 무리한 실적요구 관행 빈번, 조달진입 장벽

* 지방계약법은 2억원 미만 용역조달시 실적에 의한 입찰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('17년)하였으며 다만 하위예규에서는 특별한 기술력 등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

- (개선) 수행실적 평가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관행 행위에 대해 법령 준수 통보 및 지도·점검 강화
 - ☞ 행정조치 :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통보 및 지도·점검('19.하/행안부)

2-2. 인력·기술 분야 (6건)

① 미용관련 재학생 실습규정 마련^{개인서비스}

- (현황) 미용사 면허증 미소지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는 가능하나, 보조 이상의 미용 실무수습은 불가능
 - * 미용학과 재학 중인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(전문대 포함)이 미용업소에서 공식적인 실습을 할 경우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실습에 애로
- (개선) 이·미용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실습 업무범위, 재학생 중 허용대상 등 이·미용학 재학생 등에 대한 실습규정 마련
 - ☞ 행정조치 :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'20.하/복지부)

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범위 확대^{소기업}

- (현황)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가능하나 일정시점* 이후 신규 대체인력자만 인정, 기업애로
 - *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
- [사례] 광진구 소기업은 근로자의 임신기 단축근무로 채용한 대체직원이 출산 휴가 시작일 전 60일 이후 채용된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 거부
- (개선)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범위를 넓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도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기간 계속고용시 지급
 - ☞ 행정조치 :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('20.상/고용부)

③ 외국인력 활용기업 내국인 구인노력 규제유연화^{음식업}

- (현황)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 (7~14일)을 하여야 하나, 외국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큰 부담

[사례] A 대표는 식당처럼 직원이 수시로 바뀌며 내국인이 기피하는 단순기능의 직종은 외국인력 활용이 절실한데 잦은 이직으로 정상영업이 불가하다고 불만

- (개선) 채용 후 일정기간 내 이직(사업주 귀책이 아닌 사유)한 외국인력의 대체인력 신청 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방안 마련
 - ☞ 행정조치 :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('20.하/고용부)

4] 소상공인 근로관계 민사법률 지원허용^{소상공인}

- (현황) 소상공인 민사법률지원제도는 상거래 분쟁에 한정, 근로관계 관련사항은 제외되어 기업불편·불만 상당
- (개선) 횡령·배임 등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관계 관련 소송 추가 지원
 - ☞ 행정조치 :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[별표1] 개정('19.하/법률구조공단)

5]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통용관행 개선^{정보서비스}

- (현황) SW기술자 기술등급(특급·고급 등)은 폐지되었으나 인건비 산정을 위해 현장에서는 기존 등급제도가 관행처럼 요구·통용
- (개선) 소프트웨어기술자 임금실태 조사시 IT직무별(기획, 디자인 등 29개) 평균임금만을 공표하여 기술등급제 통용관행 적극개선
 - ☞ 행정조치 : SW기술자 임금실태 조사결과 공표방식 개선('19.하/과기정통부)

6] 산업기술혁신사업 동시수행 총량제 제한 완화^{소기업}

- (현황)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총량제(원칙: 중견 5개, 중소 3개)로 인해 우수기업의 연구개발·기술혁신 저해*
 - * 다만 우수성과 기업은 1회에 한해 총량제 적용을 제외하나 수혜기업 미미
- (개선) 성과활용 우수과제 수행기업 등 우수기업에 대한 동시수행 총량제 적용예외 범위 확대
 - ☞ 행정조치 :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(고시) 개정('19.하/산업부)

3.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

◆ 사용료 등 준조세(비자발적 금전부담) 및 행정부담 경감(10건)

3-1. 준조세 분야 (5건)

①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확대^{시장상인}

- (현황) 전통시장 내 국유지는 일률적으로 사용료의 80%가 감면되나 공유지는 80%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별도 규정
 - 전통시장 공유지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공유재산 감면 수혜시장이 적어 시장상인 부담
 - * (공유지 사용감면 규정마련 지자체) 98곳, 43.4%, (감면시장) 359곳, 24.9%
- (개선) 지자체에 대해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감면율을 국유지와 동일한 수준(80%)으로 확대
 - ☞ 행정조치 : 감면조례 제정(35곳) 및 감면현황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('19.하), 지자체 감면조례 제정권고('20.상),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('20.하/중기부)

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^{사회적기업}

- (현황) 소비자생활협동조합(생협)*이 소비자의 후생복지 증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
 - * 현황('18년) : (생협수) 전체 487개, 지역 166개, 대학·직장 39개, 의료 282개, (조합원수) 156만명, (총공금액) 8,090억원, (총출자금) 1,560억원
 - 하지만 사용료 면제근거 규정이 국유재산에만 한정되어 있어,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운영애로 호소

[사례] 생협 운영 A씨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,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에 불만

- (개선)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규정 신설

☞ 행정조치 :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추진(국회논의 적극대응, '20.상/공정위)

③ 전동공구 전기용품 안전관리 인증비 대폭 경감^{소기업}

- (현황) 전동공구는 가장 강화된 안전관리* 대상품목으로 소기업은 안전인증(제품시험+공장심사+정기검사)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부담

* ① 안전인증(위해도高), ② 안전확인, ③ 공급자적합성확인(위해도低)으로 단계별 관리

[사례] C사는 위해도가 낮음에도 일반공구 인증비는 500여만원 발생(수수료 50~70만원, 시험·검사비용 270만원, 컨설팅비용 70만원, 충전공구는 700~800만원 발생(몸체, 배터리, 충전기 등)으로 영세기업으로 과도하다고 지적

- (개선) 기술개발 및 위해도 저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동공구를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*으로 관리수준 합리화, 인증비 경감

* 안전인증보다 위해수준이 낮으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제품시험으로 안전관리

☞ 행정조치 :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관련요령 개정('20.하/산업부 국표원)

④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검사 부담경감^{소기업}

- (현황) 생활화학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관련, 용기·포장 등을 경미하게 변경한 파생제품*도 별도로 용기·포장 안전확인을 득해야 함

*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(대표제품)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,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(색깔 등 디자인 변경은 검사제외)

- 소기업은 유사·동일제품에 대한 잦은 시험·검사로 인해 비용·시간상 부담*이 높으며, 검사부담 완화를 지속요구

* '19년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시험기관 시험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고절차가 추가되어 소요기간(보완기간 포함)이 2배 이상 증가

- (개선) 안전확인을 득한 생활화학제품의 파생제품인 경우,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하여 용기·포장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외

-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5일로 단축

☞ 행정조치 :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(고시) 개정('20.하/환경부)

⑤ **공중위생관리법 행정제재 부담완화**^{공중위생업}

- (현황) 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소의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어 과도한 규제부담 제기

[사례] 숙박업소에서 객실, 침구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(금50만원) 및 행정처분(경고)

- (개선)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유사사례 및 과태료 부과체계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및 법령개정

☞ 행정조치 :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('20.하/복지부)

3-2. 행정부담 분야 [5건]

① **동일세대원 복수 연대보증 채무조정 행정부담 경감**^{소상공인}

- (현황) 연대보증은 개별 채무조정만 가능*하여 동일세대원 복수 보증인의 경우, 인지부족으로 본인채무조정 이후에도 채무 여전

* 서민금융법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주관하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(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 조정, 상환유예, 채무감면) 지원

[사례] 소상공인 A씨는 사업 중 빚을 못 갚아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였으나, 공동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B씨에 대하여 채권자인 OO기금이 채무 감면 없이 채무 전부를 변제토록 하고 부동산 경매조치를 취하는 것에 불만

- (개선) 동일세대원인 복수(예 : 부부)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연체부담 동시해결

☞ 행정조치 :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편람 개정 및 시행('19.하/금융위·신복위)

② **개인사업자 카드사용내역 홈택스 등록연계 불편완화**^{개인기업}

- (현황) 법인기업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카드발급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등록이 되지 않아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에 애로 발생

[사례] 개인사업자 A씨는 홈택스에서 카드사용내역을 매월·실시간 확인할 수 없어 세무대리인 요청도 어렵고 수기로 일일이 문서작업을 하고 있다고 불만

- (개선)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제공하여 실시간 조회가능토록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사업자 자동등록 연계방안 검토
- ☞ 행정조치 : 사업용카드 사용내역 매월 제공('19.11월) 및 연계방안 검토('20.상/국세청)

3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일 사전통보^{소상공인}

- (현황) 법인세 자진신고 분할납부시 별도 사전통보 절차가 없어, 소상공인이 분납기한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산세 납부어로 발생
- (개선) 법인세 분할납부 신고안내문에 법정 신고기한, 분납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기업 세제납부 불편해소
- ☞ 행정조치 : 법인세 분할납부 신고안내문 개선('20.상/국세청)

4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간소화^{소기업}

- (현황) 모든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은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(고용계획 등)*를 연 2회 제출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
- * 장애유형·정도, 성별 등에 따른 상세한 장애인 고용현황과 고용예정 직무, 채용방법 등 향후 고용계획,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 등 서식이 너무 복잡·과다
- (개선)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서식간소화 및 고용개선계획 도입과 병행하여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횟수 단축방안 검토·추진
- ☞ 행정조치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'21.하/고용부)

5 기업 신청시 법인 증빙서류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^{소기업}

- (현황) 기업은 공공입찰, 사업지원 등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, 국세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제출 부담으로

[사례] 소기업 B대표는 회사정보에 대하여 매번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너무 시간비용이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, 온라인은 안되고 법원등기소에서만 발급가능하다고 이는 늦은행정이라고 언급

- (개선) 기업 신청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(법인 등기부등본 등)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시스템 개선
- ☞ 행정조치 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후 단계별 시스템 구축('20.하/행안부)

4. 현장애로 맞춤형 해소

◆ 영업부담·불편을 야기하는 지역현장의 각종애로 해소지원(6건)

1 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주자격 완화^{소공인}

- (현황) 수제화 소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자체 공동판매장을 운영하나 공동브랜드 사용동의 조항으로 입점제한, 기업불만

[사례] 성동구에서 수십년간 수제화 제조를 한 A씨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난으로 매출이 줄자 작년 공동판매장에 입점하였지만, 공동판매장 브랜드 사용으로 자사브랜드의 적극 홍보가 어려워 향후 판로확보에 애로

- (개선)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시 공동브랜드 사용동의 규정 삭제

☞ 행정조치 :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 관리운영 규정(훈령) 개정('20.상/성동구)

2 소매업 비용기 회수 영업부담 완화^{소매업}

- (현황) 생계형 소매업자*는 비용기 적치공간 부족 및 반환처리에 따른 시간소요 등으로 인해 비용기 회수 영업부담 상당**

*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라도 빈병을 반환받아야 하며 거부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

** 특히 영업장 규모가 작은 소매업주(점포 총면적 165㎡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(슈퍼마켓), 개인편의점인 나들가게 등)의 경우 인력 및 장소 부족으로 애로

[사례] A소매업체는 일일이 신병과 구병을 구별하고 라벨 및 금액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한가한 시간을 안내, 반환처리하였으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음

- (개선) 비용기 반환요일·시간 규정 등 비용기 취급 소매점 편의 제고 및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

☞ 행정조치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('20.상/환경부)

3 전통시장 공동전기요금 부담완화^{시장상인}

- (현황) 가로등, CCTV 등 공공용 및 공동사용 설비에 대해 전기요금 부담주체*가 상이하며 상인회 직접 납부시 비용부담 상당

* 공공용·공동사용 설비 전기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지자체는 27.4%,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20.2%에 불과하며 형평성 문제도 야기

- (개선) 전기요금 부담실태 파악 및 전통시장 공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근거 마련권고 및 요금지원 확대 유도
 - ☞ 행정조치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('19.하/20개 지자체), 미제정 지자체 감면조례 제정권고 및 유도('20.하/중기부)

4] 중소·영세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경감^{소기업}

- (현황) 퇴직연금 도입·운영에 따른 수수료(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으로 결정) 부담으로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시 애로
 - *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수행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
- (개선) 중소·영세기업의 퇴직연금제 도입·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 지원 등 부담 경감방안 추진
 - ☞ 행정조치 : 수수료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추진('20.하/고용부)

5] 금천구 G밸리 교통정체 불편완화^{소기업}

- (현황) G밸리 내 지식산업센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('15년 29곳 →'19년 75곳) 수출의 다리 및 철산교 부근 교통체증 심각

[사례] G밸리 2·3단지에만 대략 20만 6천여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상당하며 관련협회는 관련기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묵묵부답
- (개선) 철산교 하부도로 확장·우회 연결도로 우선확충 및 G밸리 활성화를 위한 교통종합개선대책 적극 추진 등 교통불편 해소
 - ☞ 행정조치 : 철산교 하부도로 확장 및 남측교량 신설('19년 계획, '20~'22년 공사), 디지털3단지~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및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(~22년), 관계기관 합동 G밸리 교통개선대책 마련·추진('20.상/서울시)

6] 작은기업 특성별 집적지구 지정신청 적극추진^{소기업}

- (현황) 금속가공·봉제 소공인, 인쇄제조업 등 소상공인은 관련 집적지구 지정을 통해 지원제도 활용 및 매출증대를 적극 희망
- (개선)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지역 관련업체와 협업하여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등 관련지구 지정신청 신속추진('20.하/서울시)

IV. 향후 추진계획

□ 규제애로 과제 유형별 후속조치 적극 실시

- (개선과제) 금번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('20.상)*
 - *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과제 적극홍보
- (협의과제) 장기검토, 수용곤란 과제 중 추가협의를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규제애로 심의위원회* 논의를 거쳐 개선추진
 - * 중기 옴부즈만(위원장), 주요부처 고위공무원, 분야 옴부즈만, 민간 전문가, 기업인 등

□ 개선과제 추진일정 (40건)

번호	개선과제	일정	소관
1.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 (9건)			
1-1. 등록·허가 분야			
1-01	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허용	'19.하	국세청
1-02	개인위치정보 창업기업 진입규제 완화	'20.하	방통위
1-03	관광통역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	'19.하	문체부
1-04	소형호텔 등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부담 완화	'19.하	문체부
1-05	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·추진	'20.하	문체부
1-06	종합미용사 자격 신설 및 종합미용업 면허 부여	'20.하	복지부
1-2. 입지·건축 분야			
1-07	산업단지 비제조업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	'20.상	산업부
1-08	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비율 상향조정	'19.하	산업부
1-09	마곡일반산업단지 연구시설 공실활용 활성화	'19.하	서울시
2. 생존·성장 저해규제 합리화 (15건)			
2-1. 거래·판로 분야			
2-01	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부과방식 합리화	'20.상	과기정통부
2-02	건설기술용역 지방계약 적격통과점수 상향조정	'20.하	행안부
2-03	주류 전문소매점 취급 판매품목 기준 합리화	'19.하	국세청

번호	개선과제	일정	소관
2-04	공예품 판매수익 배분비율 표준화	'21.상	문체부
2-05	주류 경품제한 규정 현실화	'19.하	국세청
2-06	자동차정비업자 점검·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	'19.하	국토부
2-07	저작권 대리중개 계약불편 완화	'20.하	문체부
2-08	섬유제품 공동계약에 의한 조달 활성화	'19.하	조달청
2-09	소규모 지방용역 조달시 과도한 실적평가 관행개선	'19.하	행안부
2-2. 인력 - 기술 분야			
2-10	미용관련 재학생 실습규정 마련	'20.하	복지부
2-11	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범위 확대	'20.상	고용부
2-12	외국인력 활용기업 내국인 구인노력 규제유연화	'20.하	고용부
2-13	소상공인 근로관계 민사법률 지원허용	'19.하	법률구조공단
2-14	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통용관행 개선	'19.하	과기정통부
2-15	산업기술혁신사업 동시수행 총량제 제한 완화	'19.하	산업부

3.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 (10건)

3-1. 준조세 분야			
3-01	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확대	'20.하	중기부
3-02	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	'20.상	공정위
3-03	전동공구 전기용품 안전관리 인증비 대폭 경감	'20.하	산업부
3-04	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검사 부담경감	'20.하	환경부
3-05	공중위생관리법 행정제재 부담완화	'20.하	복지부
3-2. 행정부담 분야			
3-06	동일세대원 복수 연대보증 채무조정 행정부담 경감	'19.하	금융위
3-07	개인사업자 카드사용내역 홈택스 등록연계 불편완화	'20.상	국세청
3-08	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일 사전통보	'20.상	국세청
3-09	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간소화	'21.하	고용부
3-10	기업 신청시 법인 증빙서류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	'20.하	행안부

4. 현장애로 맞춤형 해소 (6건)

4-01	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주자격 완화	'20.상	성동구
4-02	소매업 빈용기 회수 영업부담 완화	'20.상	환경부
4-03	전통시장 공동전기요금 부담완화	'20.하	중기부
4-04	중소·영세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경감	'20.하	고용부
4-05	금천구 G밸리 교통정체 불편완화	'20.상	서울시
4-06	작은기업 특성별 집적지구 지정신청 적극추진	'20.하	서울시